

10. 建設業法 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2-183號 1992. 12. 16

1. 개정취지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재해 및 부실시공의 방지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급한도액 산정방법을 개선하는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또는 갱신) 신청시와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함.

나. 건설업 양도인가 공고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재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한도액 산정시 상벌평가액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 :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벌평가액으로 더함.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상벌평가액으로 뺌.

○당해 건설업자의 재해율이 건설업종 재해율의 2배이상이거나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경우 :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벌평가액으로 뺌.

라.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도급한도액산정시 기술개발평가액의 반영비율을 현행 10배에서 20배로 상

향조정하되, 공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년도 도급한도액산정시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하도록 함.

마. 기타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3년 1월 5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 전화: 503-7389)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